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8.(화)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구청장**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

○ 제출일 : 2026. 8. 21.

○ 회부일 : 2026. 8. 24. (의안번호 : 26-76)

2. 제출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마포복지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의 필요성

1) 사회복지 정책환경 변화와 지역문제에 선제적 대응,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마포복지재단의 사무실 무상사용 필요

나. 무상사용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무상사용 면적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4길50(염리동)1층	172.04㎡ (1층 일부)

다. 최초허가일 : 2021. 11. 1

라. 사용기간 : 마포복지재단

마. 사용용도 : 재단 사무공간(사무실, 임원실, 교육실, 기타 물품 보관실 등)

바. 사용기간 : 2026. 11. 1. 사무실 이전 시까지

사. 사 용 료 :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4. 참고사항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마포복지재단의 사업에 필

요한 사무실, 임원실, 교육실, 기타물품 보관실 등 재단 사무공간으로 우리 구 행정재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1층 일부(172.04㎡)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규정과 상충됨이 없고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복지정책과	김은숙 (8810)	오경화 (8831)

참 고 자 료

1.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24조제1항제4호에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마포복지재단 일반 현황 (2026. 1. 현재)

□ 설립 개요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공익법인법/지방출자출연법
서울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형태 : 마포구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 설립허가 : 2021. 11. 2.(대표자: 김은영)

○ 기본재산 출연: 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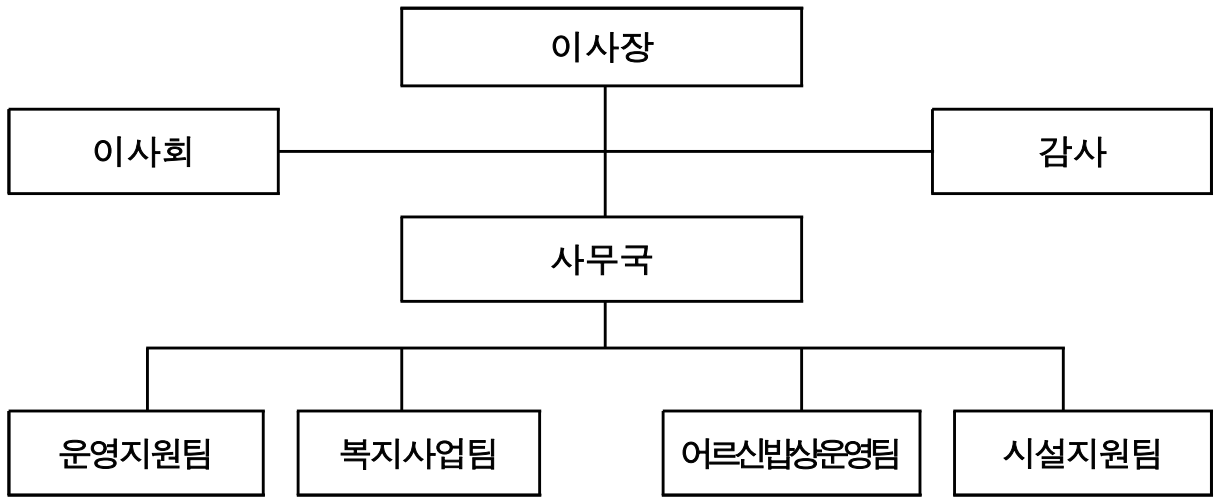
- 보통재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매년 별도 출연)

○ 조직·인력 : 이사회(이사17명, 당연직포함), 감사(2명), 사무국 및 반찬공장(29명)

- 현 재직 이사 임기 2027. 11. 1. 까지 /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나, 이사장은 단임제)

○ 주요사업 : 어르신밥상 사업,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복지시설 운영 등

□ 기 구 ---------- 1이사회, 1국, 4개팀



□ 인 력 ---------- (정원:13명, 현원:31명)

구 분	계	이사장	국장 (2급)	팀장 (3급)	대리(4급), 주임(5급)	정원외 인력
정 원	13	1	1	4	7	-
현 원	31	1	1	4	7	18

※ 정원외 인력(16명): 어르신밥상 반찬공장(16명 / 영양사 및 조리, 배송인력)
계약직(2명 / 사회복지사, 어르신밥상 전담인력)

□ 예산 현황 (2026년)

(단위 : 천원)

합계	보통재산	후원금	기타(이자 등)
7,283,330	1,843,183	2,595,207	2,480,940

□ 기타 현황

○ 위원회 : 2개 운영(인사위원회,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

□ 수탁시설 현황 : 20개 시설

(2026.1.16.기준)

연번	시설명	직원수	소재지	수탁기간
1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 1호점	3명	성산2동	2022. 4. 1. ~ 2027. 3. 31.(5년)
2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47명	성산1동	2023. 5. 1. ~ 2028. 4. 30.(5년)
3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5명	성산1동	2023. 5. 1. ~ 2028. 4. 30.(5년)
4	누구나동행하우스	3명	공덕동	2023. 3. 10. ~ 2028. 3. 9.(5년)
5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2명	대흥동	2023. 9. 1. ~ 2028. 8. 31.(5년)
6	마포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	10명	아현동	2023. 9. 1. ~ 2028. 8. 31.(5년)
7	마포구가족센터	26명	합정동	2024. 1. 1. ~ 2028. 12. 31.(5년)
8	초록숲데이케어센터	12명	아현동	2024. 4. 1. ~ 2029. 3. 30.(5년)
9	창전동효도숙식경로당	1명	창전동	2024. 4. 8. ~ 2027. 4. 7.(3년)
10	공덕실뿌리복지센터	5명	공덕동	2024. 4. 4. ~ 2027. 4. 3.(3년)
11	창전데이케어센터	12명	창전동	2024. 6. 1. ~ 2029. 5. 31.(5년)
12	성산누리어린이집	15명	성산동	2024. 7. 27. ~ 2029. 7. 26.(5년)
13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8명	상암동	2024. 9. 1. ~ 2029. 8. 31.(5년)
14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17명	성산동	2024. 11. 1. ~ 2029. 10. 31.(5년)
15	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병설 마포데이케어센터)	45명	서강동	2024. 11. 8. ~ 2029. 11. 7.(5년)
16	용강어린이집	13명	용강동	2025. 1. 1. ~ 2029. 12. 31.(5년)
17	연남어린이집	10명	연남동	2025. 5. 1. ~ 2030. 4. 30.(5년)
18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17명	상암동	2025. 9. 1. ~ 2028. 8. 31.(3년)
19	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쌍룡산근린공원점	17명	염리동	2026. 1. 26. ~ 2031. 1. 25.(5년)
20	마포구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3명	용강동	2025. 12. 1. ~ 2030. 11. 30.(5년)